

---

#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2022. 12. 5.

양형위원회

---

##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설정 배경
  -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 지도층 탈세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 높음
  - 조세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넓은 의미의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할 필요가 있음
  - 발생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낮은 편이 아니며[2006~2008년 1,028건(0.25%) → 2011~2020년 2,444건(0.15%)], 징역형 비율(70.34%)도 높은 편임
- 수정 경과
  - 2021. 6. 7. 제110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2. 4. 25. ~ 5. 6. 관세범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 2022. 8. 16. 제118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중 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 
- 2022. 9. 19. 제119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중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심의
  - 2022. 12. 5. 제12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심의 및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 2022. 12. ~ 2023. 1.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예정
  - 2023. 3.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2. 4.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관세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 II. 관세범죄 개관

### 1. 관련 법률의 체계 및 보호법익

#### 가. 의의

-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의미함
-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포탈한 관세액 또는 수출입한 물품원가 등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음

#### 나. 보호법익

##### ▣ 관세법은 통관법적 성격과 조세법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고 판시하거나 ‘관세법에서 무신고 수출입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그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대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도5582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음

- 자유무역이 강조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세계적인 추세의 영향으로 관세법 보호법익의 초점이 관세수입의 확보에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로 옮겨짐

#### ■ 관세범죄는 크게 ① 관세포탈 범죄와 ②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구분

- 관세포탈 범죄는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관절차위반 범죄는 ㉣ 통관절차의 기본인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 ㉥ 위와 같이 통관절차등을 위반하여 수출입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 특징

- 관세범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 해악성: 밀수로 인한 관세수입 탈루,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발전 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 등
  - 영리성: 빈곤 타개보다는 일확천금 등 경제적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 적발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범행 등
  - 전문성, 국제성, 지능성: 국내외 규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국제적 상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치밀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수법 등
  - 조직성: 대체로 점조직, 자금책이나 배후, 구입자와 운반자, 보관자와 판매자 등

## 2. 관련법률

### 가. 관세범위반

기본 구성요건(관세법)		가중적 구성요건(특정범죄가중법)		법정형(징역)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가중적 구성요건	
§269 ①	금지물품 수출·수입	§6 ① i	물품가액 1억 원↑	무기, 7년↑
		§6 ① ii	물품가액 3천만 원~1억 원	3년↑
§269 ②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6 ② i	물품원가 5억 원↑	무기, 5년↑
		§6 ② ii	물품원가 2억 원~5억 원	3년↑
§269 ③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6 ③	물품원가 5억 원↑	1년↑
§270 ① i §270 ④ §270 ⑤	관세포탈/ 부정 관세감면 등/ 부정 관세환급	§6 ④ i	포탈세액 2억 원↑	무기, 5년↑
§6 ④ ii		포탈세액 5천만 원~2억 원	3년↑	

기본 구성요건(관세법)		가중적 구성요건(특정범죄가중법)		법정형(징역)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가중적 구성요건	
§270 ②	부정 수입	§6 ⑤ i	물품원가 5억 원 ↑	3년 ↑
		§6 ⑤ ii	물품원가 2억 원~5억 원	1년 ↑
§269/ §270/ §274	관세포탈 등/ 무신고 수입·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	§6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 습적으로 범행	무기, 10년 ↑

##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기본 구성요건(관세법)		가중적 구성요건(특정범죄가중법)		법정형(징역)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가중적 구성요건	
§269 ①	금지물품 수출·수입	§6 ① i	물품가액 1억 원 ↑	무기, 7년 ↑
		§6 ① ii	물품가액 3천만 원~1억 원	3년 ↑
§269 ②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6 ② i	물품원가 5억 원 ↑	무기, 5년 ↑
		§6 ② ii	물품원가 2억 원~5억 원	3년 ↑
§269 ③	무신고 수출 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반송	§6 ③	물품원가 5억 원 ↑	1년 ↑
§270 ① i §270 ④ §270 ⑤	관세포탈/ 부정 관세감면 등/ 부정 관세환급	§6 ④ i	포탈세액 2억 원 ↑	무기, 5년 ↑
		§6 ④ ii	포탈세액 5천만 원~2억 원	3년 ↑
§270 ②	부정 수입	§6 ⑤ i	물품원가 5억 원 ↑	3년 ↑
		§6 ⑤ ii	물품원가 2억 원~5억 원	1년 ↑
§269/ §270/ §274	관세포탈 등/ 무신고 수입·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	§6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 습적으로 범행	무기, 10년 ↑

(이하 여백)

### 3. 양형자료조사 결과<sup>1)</sup>

#### 가. 관세법위반 연도별 사건 수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관세법 268조의2 2항 1호	수	-	-	-	-	2	2
	비율	-	-	-	-	100.0	100.0
관세법 269조 1항	수	3	3	1	-	-	7
	비율	42.9	42.9	14.3	-	-	100.0
관세법 269조 2항 1호	수	62	131	72	41	34	340
	비율	18.2	38.5	21.2	12.1	10.0	100.0
관세법 269조 2항 2호	수	16	10	10	6	6	48
	비율	33.3	20.8	20.8	12.5	12.5	100.0
관세법 269조 3항 1호	수	2	7	-	4	15	28
	비율	7.1	25.0	-	14.3	53.6	100.0
관세법 269조 3항 2호	수	8	2	2	2	6	20
	비율	40.0	10.0	10.0	10.0	30.0	100.0
관세법 270조 1항 1호	수	17	10	5	1	3	36
	비율	47.2	27.8	13.9	2.8	8.3	100.0
관세법 270조 2항	수	7	2	4	3	4	20
	비율	35.0	10.0	20.0	15.0	20.0	100.0
관세법 270조 3항	수	-	1	-	1	-	2
	비율	-	50.0	-	50.0	-	100.0
관세법 270조 4항	수	-	1	-	-	-	1
	비율	-	100.0	-	-	-	100.0
관세법 270조의2 3호	수	4	4	1	-	4	13
	비율	30.8	30.8	7.7	-	30.8	100.0
관세법 274조 1항 1호	수	11	2	3	1	2	19
	비율	57.9	10.5	15.8	5.3	10.5	100.0
전체	수	130	173	98	59	76	536
	비율	24.3	32.3	18.3	11.0	14.2	100.0

1)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 경합범 대상 사건 통계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석 Ⅲ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범죄, 관세법위반범죄 -” 참조(이하 통계도 동일함)

##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연도별 사건 수

단위: 명, %

적용법조		선고연도					전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특정범죄가중법 6조 2항 1호	수	11	1	-	2	2	16
	비율	68.8	6.3	-	12.5	12.5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2항 2호	수	2	4	4	-	2	12
	비율	16.7	33.3	33.3	-	16.7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3항	수	-	-	8	2	14	24
	비율	-	-	33.3	8.3	58.3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4항 2호	수	-	-	1	-	1	2
	비율	-	-	50.0	-	50.0	100.0
특정범죄가중법 6조 5항 1호	수	-	1	-	-	-	1
	비율	-	100.0	-	-	-	100.0
전체	수	13	6	13	4	19	55
	비율	23.6	10.9	23.6	7.3	34.5	100.0

(이하 여백)

---

### Ⅲ.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 1. 고려 사항

##### 가. 일반원칙

-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발생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함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에는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한 점,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양형의 폭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나. 관세범죄 설정대상 선정 기준

- 관세범죄 중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함
- 다만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대상으로 검토함

#### 2. 설정 범위

##### 가. 설정범위에 포함된 범죄

###### 1) 관세포탈 범죄

---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 제4항(부정 관세감면), 제5항(부정관세환급) ➔ 포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는 관세범죄 중 관세포탈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발생빈도도 높은 편인바(36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 관세감면), 같은 조 제5항(부정 관세환급)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법정형이 같고, 범행 수법의 차이일 뿐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나 결과가 동일하며, 관세수입 확보라는 보호법익에 비추어 동질적인 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관세포탈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8항은 관세법상 관세포탈 범죄에 대하여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2) 무신고 수입 등 범죄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무신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 ➔ 포함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은 관세범죄 중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발생빈도도 높은바(388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

---

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과 함께 대표적인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무신고 수입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 제8항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 대하여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3) 무신고 수출 등 범죄

■ 관세법 제269조 제3항(무신고 수출·반송), 제270조 제3항(부정 수출) ➔ 포함

- 관세법 제269조 제3항(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은 관세범죄 중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발생빈도도 높은 편인바(48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 수출)의 경우 발생빈도가 낮고(2건) 범정형도 낮은 편이나(1년↓), 관세법 제269조 제3항과 함께 대표적인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무신고 수출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제8항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출 등 범죄에 대하여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

---

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4) 밀수품 취득 등 범죄

##### ▣ 관세법 제274조 제1항(밀수품 취득 등) ➡ 포함

- 관세법 제274조 제1항[밀수출입품(제269조) 또는 부정수출입품(제270조)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19건), 금지품수출입, 무신고수출입(반송), 부정수출입 행위를 조장·유발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세법이 무신고수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이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 특정범죄가중법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은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하여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나. 설정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 ▣ 금지물품 수출·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 제외

- 발생빈도가 낮고(7건), 보호법익이 상이함(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 통화·유가증권 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안전, 국경질서의 적정성 확보)
- 금지물품 수출·수입죄의 객체는 아래와 같은바, 총포, 문화재, 마

약 등 다른 법률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위 객체에 해당하지 않음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변조된 유가증권, 성풍속 저해 물품이 대부분이고, 주로 여행자나 우편물에 의해 반출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2)</sup>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규정에서는 금지물품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물품가액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사례도 없음. 결국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금지물품 수출·수입죄에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면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도 없음

■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 제외

-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고(13건), 관세포탈 이외의 다른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신용장 사기, 대출금 편취 등 무역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짐
- 가격조작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실무례는 아직 없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가 2010. 3. 31.

2) 성풍속 저해 물품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물품을 폐기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위·변조된 유가증권 등의 경우 행사 목적 위·변조 유가증권 수출입죄(형법 제217조, 10년↓) 또는 위·변조 통화 수출입죄(형법 제207조 제4항, 무기 또는 2년↑, 1년↑, 10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됨

---

전문개정된 후 비로소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가 2014. 1. 1. 신설되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라는 문언에 신설된 제272의2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적어도 가중처벌 규정의 존부에 논란이 있으므로 실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 등) ➡ 제외

- 발생빈도가 낮고(2건), 보호법익이 상이하며(전자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 범행 태양도 일반적인 관세범죄와 달라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 제외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의 개정 연혁을 볼 때,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

■ 관세법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 제275조의3(납세신고 명의대여), 제275조의4(보세사 명의대여), 제276조(허위신고 등) ➡ 제외

-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고, 법정형이 낮거나 벌금만을 두고 있으며, 관세포탈 또는 통관절차위반 범죄와는 그 행위 태양이나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적음

■ 다른 법령상 관세 관련 범죄 ➡ 제외

- 
- 관세법 외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주한미군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등이 있음
  - 그러나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고, 관세포탈 또는 통관절차위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적음

(이하 여백)

---

## IV. 관세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 2. 유형 분류 정리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 01<sup>1</sup> 관세포탈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02<sup>1</sup>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03<sup>1</sup>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2	5억 원 이상			
3	집단범·상습범			

####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2	집단범·상습범			

### 04<sup>1</sup>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2	집단범·상습범			

## [유형의 정의]

### 01 | 관세포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02 |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부정 수입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03 |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구성요건	적용법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출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2)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04<sup>1</sup> 밀수품 취득 등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 V. 관세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 1.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고려사항

#### ▣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 2. 관세포탈

#### 가.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1)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관세법 270조 1항 1호	수	-	2	-	11	-	6	-	9	6	1	-	1	-	-	-	36	8.77
	비율	-	5.5	-	30.5	-	16.6	-	25.0	16.6	2.7	-	2.7	-	-	-	100.0	
관세법 270조 4항	수	-	-	-	-	-	-	-	1	-	-	-	-	-	-	-	1	10.00
	비율	-	-	-	-	-	-	-	100.0	-	-	-	-	-	-	-	100.0	
전체	수	-	2	-	11	-	6	-	10	6	1	-	1	-	-	-	37	8.81
	비율	-	5.4	-	29.7	-	16.2	-	27.0	16.2	2.7	-	2.7	-	-	-	100.0	

##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참조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30억~5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포탈세액 하한의 정함이 없어 포탈세액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 각 영역의 구성

- ①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과 같이 정하고, ② 기본영역의 상한과 가중영역은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과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통계에서 29.7%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이 포섭

할 수 있어야 함

## 나.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1)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 법 6조 4항 2호	수	-	-	-	-	2	-	-	-	-	-	-	-	2	18.0
	비율	-	-	-	-	100.0	-	-	-	-	-	-	-	100.0	0

###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5억~10억)	3년 ↑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0억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포탈세액 하한과 상한의 정함이 있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와 같이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고 형량범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과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다. 제3유형(2억 원 이상)

### 1)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2년6월 2건, 3년 4건 정도 확인됨

###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10억~200억)	무, 5년↑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특가법 조세포탈(200억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5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00억 이상)’ 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포탈세액 상한의 정함이 없어 포탈세액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과 같이 정하고, ② 기본영역의 상한과 가중영역은,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보다 상향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 라. 제4유형(집단범·상습범)

### 1)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10년 1건 확인됨(다만 무신고 수입의 집단범 사안<sup>3)</sup>)

###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무, 10년 ↑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6년-9년	8년-12년	10년-15년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뇌물수수(1억~5억)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뇌물수수(5억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 관세포탈 범죄(제4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10년 ↑) 등을 고려

3) 범죄사실[5회 걸쳐 물품원가 합계 약 5억 8,000만 원(범칙시가 약 23억 원) 상당 담배 밀수입], 피고인의 지위(조직원 역할 분담, 자금 관리 및 수익 분배 등 총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중영역에 해당할 만한 사안으로 보임

---

할 때, ‘뇌물수수’, ‘상습·누범강도’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4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포탈세액, 수입, 수출 또는 밀수품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피고인의 지위나 실제로 범한 관세범죄의 법정형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sup>4)</sup>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은 ‘상습·누범강도’와 같이 정하고, ② 가중영역은,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습·누범강도’, ‘뇌물수수(1억~5억)’보다 상향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

4)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3. 수괴·간부 외 사람: 2년 이상 징역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1) 제1유형(2억 원 미만)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36			42
관세법 269조 2항 1호	수	2	14	1	54	1	68	5	76	83	9	2	20	1	-	2	1	1	340	10.01
	비율	0.6	4.1	0.3	15.9	0.3	20.0	1.5	22.4	24.4	2.6	0.6	5.9	0.3	-	0.6	0.3	0.3	100.0	
관세법 269조 2항 2호	수	-	1	-	16	-	6	-	3	17	-	-	3	-	-	2	-	-	48	10.08
	비율	-	2.1	-	33.3	-	12.5	-	6.3	35.4	-	-	6.3	-	-	4.2	-	-	100.0	
전체	수	2	15	1	70	1	74	5	79	100	9	2	23	1	-	4	1	1	388	10.02
	비율	0.52	3.87	0.26	18.04	0.26	19.07	1.29	20.36	25.77	2.32	0.52	5.93	0.26	-	1.03	0.26	0.26	100.0	

● 평균형량은 10.02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2월~42월, 빈도는 12월, 10월, 8월 등의 순임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5만 리터 미만)	5년↓	-6월	4월-10월	8월-1년6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5만~50만 리터)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50만 리터 이상)		8년-1년6월	1년-3년	2년-4년
미등급·사행성게임물 등 유통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등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 무신고 수입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5년↓) 등을 고려할 때,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입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물품원가 하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관세포탈,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 법정형 3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는 중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제2유형(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 법 6조 2항 2호	수	-	-	-	-	2	8	-	2	-	-	-	-	12	25.00
	비율	-	-	-	-	16.7	66.7	-	16.7	-	-	-	-	100.0	

- 평균형량은 25.00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18월~36월, 빈도는 24월, 18월과 36월 등의 순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5억~10억)	3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0억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등의 권고 형량범위

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하한과 상한의 정함이 있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와 같이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와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 모두 선고건수가 많지 않아[각각 12건, 4건(판결문검색 포함)]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3) 제3유형(5억 원 이상)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법 6조 2항 1호	수	-	-	-	-	-	-	6	2	3	3	1	1	16	40.88
	비율	-	-	-	-	-	-	37.5	12.5	18.8	18.8	6.3	6.3	100.0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10억~200억)	무, 5년↑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특가법 조세포탈(200억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5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00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와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 모두 선고건 수가 많지 않아[각각 16건, 6건(판결문검색 포함)]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유형 모두 법정형이 무기, 5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역시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4) 제4유형(앞의 논의와 동일함)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나. 부정 수입

##### 1) 제1유형(2억 원 미만)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관세법 270조 2항	수	-	2	-	7	-	5	-	3	3	-	-	-	-	-	-	20	7.80
	비율	-	10.0	-	35.0	-	25.0	-	15.0	15.0	-	-	-	-	-	-	100.0	

- 평균형량은 7.80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12월, 빈도는 6월, 8월, 10월과 12월 등의 순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30억~5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물품원가 하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을 보면,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고,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하로서 영역별 형량 구간의 폭이 넓지 않은바, 세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제2유형(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6월 1건, 12월 1건 정도 확인됨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1년↑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수표 위조·변조		6월-1년	10월-2년	1년-4년
19세 이상 대상 대가수수 등 성매매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1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하한과 상한의 정함이 있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와 같이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점, 양형 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가중영역의 하한과 기본영역의 상한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과 같이 정하고, ② 감경영역·가중영역의 상한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기본영역에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량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과 ‘수표 위조·변조’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3) 제3유형(5억 원 이상)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법 6조 5항 1호	수	-	-	-	-	-	1	-	-	-	-	-	-	1	24.00
	비율	-	-	-	-	-	100.0	-	-	-	-	-	-	100.0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5억~10억)	3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0억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300억 이상)’ 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 및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 모두 선고건수가 많지 않아[각각 1건, 4건(판결문 검색 포함), 12건]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나,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감경영역·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나머지 두 유형의 그것과 같이 정하되, ②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경우, 나머지 두 유형의 경우와 달리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다소 넓게 할 필요가 있는바,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나머지 두 유형의 그것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4) 제4유형(앞의 논의와 동일함)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4.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1) 제1유형(5억 원 미만)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관세법 269조 3항 1호	수	-	6	-	10	-	6	-	2	3	-	-	1	-	-	28	7.36
	비율	-	21.4	-	35.7	-	21.4	-	7.1	10.7	-	-	3.6	-	-	100.0	
관세법 269조 3항 2호	수	-	2	-	4	-	3	-	2	5	-	-	3	-	1	20	10.60
	비율	-	10.0	-	20.0	-	15.0	-	10.0	25.0	-	-	15.0	-	5.0	100.0	
전체	수	8		14		9		4		8		4		1		48	870
	비율	16.67		29.17		18.75		8.33		16.67		8.33		2.08		100.0	

- 평균형량은 8.70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22월, 빈도는 6월, 8월, 4월과 12월 등의 순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미만/ 30억~5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물품원가 하한의 정함이 없어 수출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보면,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고,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하로서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이 넓지 않은바, 세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제2유형(5억 원 이상)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법 6조 3항	수	1	9	4	6	-	4	-	-	-	-	-	-	24	11.92
	비율	4.2	37.5	16.7	25.0	-	16.7	-	-	-	-	-	-	100.0	

- 평균형량은 11.92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6월~24월, 빈도는 8월, 12월, 10월과 24월 등의 순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1년↑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수표 위조·변조		6월-1년	10월-2년	1년-4년
19세 이상 대상 대가수수 등 성매매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1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수출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와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 모두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바,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감경영역·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그것과 같이 정하되, ②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경우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경우와 달리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가중영역 형량구간의 폭을 다소 넓게 할 필요가 있는바,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은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그것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3) 제3유형(앞의 논의와 동일함)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나. 부정 수출

###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 ▣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관세법 270조 3항	수	-	1	-	1	-	-	-	-	-	-	-	-	-	-	-	2	5.00
	비율	-	50.0	-	50.0	-	-	-	-	-	-	-	-	-	-	-	100.0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도주	1년↓	-6월	4월-8월	6월-1년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 일반 부정 수출(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1년↓),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2) 제2유형(앞의 논의와 동일함)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5. 밀수품 취득 등

###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 형량분포

적용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관세법 274조 1항 1호	수	-	6	-	9	-	1	-	-	2	-	-	1	-	-	19	6.74
	비율	-	31.6	-	47.4	-	5.3	-	-	10.5	-	-	5.3	-	-	100.0	

- 평균형량은 6.74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18월, 빈도는 6월, 4월, 12월 등의 순임

#### 2)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 장물범죄 등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7년↓	4월-10월	6월-1년6월	1년-3년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7년↓, 2년↑	1년-2년	1년6월-3년	2년-4년
일반절도	6년↓	4월-10월	6월-1년6월	10월-2년
대인절도	6년↓	6월-1년	8월-2년	1년-3년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장물범죄’와 본범인 ‘절도범죄’ 등의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의 관계 등을 참조하는 한편,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본범인 무신고 수입, 부정 수입, 무신고 수출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밀수품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따른 가별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본범인 무신고 수입 등 범죄의 법정형이나 양형통계와 비교할 때 그 법정형이나 양형통계가 높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법정형(3년↓)이 같은 부정 수입(제1유형, 2억 미만) 등과 같이 정하고, ② 가중영역의 상한은 부정 수입(제1유형, 2억 미만) 등과 무신고 수입(제1유형, 5억 미만)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나. 제2유형(앞의 논의와 동일함)

### ■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6. 권고 형량범위 정리

### 01<sup>1</sup>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02<sup>1</sup>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03<sup>1</sup>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04<sup>1</sup>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 VI. 관세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 1. 관세포탈

#### 가. 특별감경인자

#####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관세법규의 복잡성과 기술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환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4)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벌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5)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6)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관세범죄의 조직성, 형사정책적 필요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환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7)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권에 대한 침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특별가중인자

###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관세범죄의 특성(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벌성을 구

---

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3)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4)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관세사 제도의 목적,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의 관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 처벌법이나 세무사법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sup>5)</sup>은 없으나, 관세사의 교사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세관공무원의 범행가담은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으므로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 일반감경인자

### 1)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

5) 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문은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행을 알선·중개한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형의 1/3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 3)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 정의규정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일반적 수사 협조

-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이지만, 관세범죄의 조직성, 형사정책적 필요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

적절함

▣ 정의규정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일반가중인자

### 1)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관세범죄의 보호범익(관세의 부과·징수의 적정),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3)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4)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관세범죄의 행정법적 성격,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

식품·보건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5)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마. 양형인자 요약**

**01<sup>1</sup> 관세포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 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반적 수사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2. 무신고 수입 등

### 가. 특별감경인자

#### 1)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입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나. 특별가중인자

#####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범죄의 보호법익(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 통관절차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양형실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범죄, 식품·보건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입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 일반감경인자

#### 1)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 무신고 수입 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고 정당한 관세의 확보는 부수적인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

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위조상품, 마약과 같이 유통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밀수입 범행의 경우에는 유통이 금지되는 까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의규정에 이를 명확히 함

#### ▣ 정의규정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일반가중인자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범죄의 영리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증권·금융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양형인자 요약

## 02<sup>1</sup>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li>●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ul>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 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나. 부정 수입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3. 무신고 수출 등

#### 가. 특별감경인자

##### 1)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수출품 자체가 갖는 폐해 및 위험 발생에 관한 특별가중인자로는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존재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집단범·상습범)

- 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출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나. 특별가중인자

#####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집단범·상습범)

- 집단범·상습범의 경우 무신고 수출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3)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일반 부정 수출)

- 부정 수출의 경우 수출의 규모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은 없으나, 무신고 수출 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양형요소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 일반감경인자

####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양형인자 요약

### 03 |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3 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나. 부정 수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2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li>●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li> <li>●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2 유형)</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ul>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 4. 밀수품 취득 등

### 가. 특별감경인자

#### 1)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나마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보건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양형실무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밀수품의 규모에 따라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 수입 범죄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나. 특별가중인자

#### 1)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무신고 수입/수출 등 범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밀수품의 규모에 따라 가벌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신고 수입 범죄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을 참조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3)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보따리상 이용 등 밀수품 취득범이 실질적인 배후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물범죄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정의규정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일반감경인자

### 1)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형실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도산 회피 또는 영업 계속 등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 친족간 범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장물범죄에서는 본범과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특별감경인자인데, 관세범은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양형인자 요약

### 04<sup>1</sup> 밀수품 취득 등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li> <li>●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일반적 수사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VII. 다수범죄 처리기준 검토

- ▣ 조세범죄 등과 같이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및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되, 하한을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함

### 03<sup>1</sup>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관세포탈 범죄,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부정 수입 범죄,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부정 수출 범죄,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04<sup>1</sup>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VIII. 관세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 1. 관세포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li> <li>○ 일반적 수사 협조</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2. 무신고 수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일반적 수사 협조</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3. 무신고 수출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일반적 수사 협조</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4. 밀수품 취득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li> <li>○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li> <li>○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li> <li>○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일반적 수사 협조</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